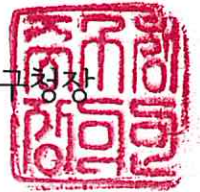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일
발 의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4.11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사용료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명확화를 통한 위탁연장 관행 개선 및 재계약 절차 보완(안 제13조)

- 제13조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계약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위탁연장 기간 및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단체의 장기간 위탁하는 특혜발생 소지가 있어, 위탁연장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위탁기간과 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청소년 복지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비 개정 (안 별표2)

- 2001년 9월 개관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2015년 10월 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5. 7월 [20일]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음악·예술·체육 정보·과학 등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유아반	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취미·교양·문화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초·중·고생,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상 담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				
청소년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계약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간) ① <u>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u> ② <u>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의·의결한다.</u>

별표2 구조문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1회사용료 (1시간기준)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탁구장 (단식)	대학생, 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당구장	대학생, 성인	4,800			초,중,고생	3,600	
골프연습장	대학생, 성인	8,000			초,중,고생	5,000	
시설대관	200석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 고	1. 체육관은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시설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4. 사용료 할인(월사용료) 1) 단일시설의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독서실 등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음 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정보·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문예및창작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상 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초,중,고생,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 할증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 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사용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사용료 구분	대상	월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음악·예술·체육 정보·과학 등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유아반	내용, 강사 등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취미·교양·문화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초·중·고생,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상 담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책정				
청소년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내용, 강사, 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타시설 유사 프로그램 준용하여 책정				
비 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영역 2) 음악·예술·체육 : 음악(보컬, 악기),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댄스 등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 외국어, 음악·예술·체육·정보·과학프로그램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등 6) 청소년사업 : 캠프, 동아리·봉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타 공모사업등					
	2. 사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 할인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6. 프로그램 특성상 상한을 초과하는 강습료가 발생할 경우, 타시설의 유사 프로그램 강습료를 준용하여 책정할 수 있다.					